

부산지방법원 2022. 3. 24 선고 2020가단940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12. 16.

판 결 선 고 2022. 3. 2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D(이하 'D'라고 한다) 사이의 2018. 1. 3.자 차용계약서 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,802,54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자재대금채권

- 1) 원고는 D에게 2018. 5. 1., 406,768원, 2018. 7. 2., 960,954원, 2018. 8. 3., 307,356원, 2018. 9. 2., 215,136원, 2018. 10. 1., 912,328원 상당의 그루브썬인트 소방자재를 각 납품하였고, 그 미지급 자재대금채권 합계는 11,802,542원이었다.
- 2) 그 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자재대금채권 11,802,542원 및 이에 대한 2018. 11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(이 법원 2018차6580호)을 신청하여 2018. 11. 5.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18. 11. 12. 송달되어 2018. 11. 27. 확정되었다.

나. D와 피고 사이의 차용약정

- 1) 피고는 2017년경 D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고, 2018. 1. 1. 기준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합계는 1,584,600,000원이었다.
- 2) 그 후 D는 2018. 1. 3. 피고로부터 D의 경영상 발생하는 자금수요에 한하여 30억 원 범위 내에서 한도 거래의 방식으로 수시로 차용하거나 상환하기로 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차용약정'이라고 한다).
- 3) D는 2018. 10. 1.1. 어음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이 사건 차용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, 그 당시 기존 차용금과 이 사건 차용약정에 따른 차용금 합계는 2,730,537,954원이었다.

다.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

그 후 D는 2018. 11. 28. 피고에게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(563,979,436원 상당)을 양도하였고,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7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2~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D에 대하여 자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. 이 사건 차용약정은 D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의 강제집행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,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피고와 D의 임원을 맡은 사람이 F, G로 동일하였는바, 위 두 사람은 피고와 D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.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D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바, 피고와 D는 통모하여 이 사건 차용약정을 체결한 것이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.

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).

2)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, 7, 8호증, 을 제2~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고,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약정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원고의 D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차용약정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.

가) 원고의 D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차용약정 이후 2018. 5.경 에 성립하였다.

나) 원고는 2018. 초경에 D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, 납품의뢰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D 사이에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- 1) 원고의 D에 대한 자채대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, 아래
- 2)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, 갑 제5,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D가 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- 가) D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H이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H, 2층으로서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.
- 나) 이 사건 차용약정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G, 감사는 F이었고, D의 대표이사는 F, 사내이사는 G였다.
- 2) 갑 제8호증, 을 제2~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차용약정은 D가 피고로부터 경영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, 일방적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바, 전체적으로 D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,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.
- 가) D는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시로 피고로부터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, 변제하여 왔다.
- 나) 이 사건 차용약정 이후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이 D로부터 상환받은 돈보다 10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보인다.
- 다) 이 사건 차용약정이 D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.
- 라) 피고가 D의 2018. 10. 11.자 당좌거래 정지를 예상하였다거나,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미리 D와 이 사건 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영